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6호 2017. 12. 1(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138호 남원시 장항교 재가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7-13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5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605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6
- 남원시 공고 제2017-1607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2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138호

남원시 장항교 재가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²)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신설	농어촌도로 (리도)	203	장항선	산내면 대정리	7,700	산내면 대정리 862-5	산내면 장항리 21-1	-	0.300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 선형불량 및 노폭협소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6.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등), 토지 및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도로구역 결정 조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12. 1. ~ 2017. 12. 15.(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도로구역 결정 조서 : “게재 생략”

8. 도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세부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시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						377,985	7,700			
1	남원	산내	대정	산42-1	도	99	15	아영면 월산리 ***	김*문	
2	남원	산내	대정	산41-1	도	193	31		서*협	
3	남원	산내	대정	1061	도	850	55		국(건설부)	
4	남원	산내	대정	863-1	도	221	103	장항리 ***	배*영	
5	남원	산내	대정	864-1	도	389	96		국(건설부)	
6	남원	산내	대정	864-2	도	140	140	인월면 천왕봉로 **	이*춘	
7	남원	산내	대정	862-7	도	129	5		국(건설부)	
8	남원	산내	대정	863-2	도	119	119	장항리 ***	배*영	
9	남원	산내	대정	862-3	도	724	569	대정리 ***	박*한	
10	남원	산내	대정	863-4	도	116	56	장항리 ***	배*영	
11	남원	산내	대정	862-5	도	1,612	816		국(건설부)	
12	남원	산내	대정	865-4	도	347	295		국(건설부)	
13	남원	산내	대정	866-1	답	133	130		국(남원시)	
14	남원	산내	대정	867-1	답	57	57	대정리 ***	곽*식	
15	남원	산내	대정	867-2	답	70	70	대정리 ***	김*자	
16	남원	산내	대정	1063	구	1,762	172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남원	산내	대정	1064	도	149	97		국(건설부)	
18	남원	산내	대정	868-1	도	687	687	장항리 **	박*근	
19	남원	산내	대정	868-4	답	114	114		국(남원시)	
20	남원	산내	대정	869-1	도	271	101		국(남원시)	
21	남원	산내	대정	867-3	답	218	218	대정리 ***	김*자	
22	남원	산내	대정	868-2	답	295	29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	박*철	
23	남원	산내	대정	1046	천	167,649	733		국(건설부)	
24	남원	산내	장항	905	천	191,726	587		국(건설부)	

일련 번호	시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25	남원	산내	장항	107-2	천	591	179		국(전라북도)	
26	남원	산내	장항	107-4	답	6	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길 **, ***동 ***호	최*영	
27	남원	산내	장항	106-1	답	24	24	장항리 ***	김*순	
28	남원	산내	장항	104-4	답	144	144	울산광역시 동구 옥류로 **, ***동 ***호	최*영	
29	남원	산내	장항	104-5	답	290	290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동 ***호	최*영	
30	남원	산내	장항	104-2	답	51	51		국(남원시)	
31	남원	산내	장항	19-5	답	34	34		국(남원시)	
32	남원	산내	장항	19-7	답	49	49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동 ***호	최*영	
33	남원	산내	장항	19-6	답	146	146		국(남원시)	
34	남원	산내	장항	19-8	답	49	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2길 **, ***동 ***호	박*진	
35	남원	산내	장항	20-3	답	5	5	산내면 매동길 **	윤*금	
36	남원	산내	장항	20-2	답	296	225		국(남원시)	
37	남원	산내	장항	5-5	천	11	11		국(전라북도)	
38	남원	산내	장항	5-2	답	87	87	장항리 ***	최*석	
39	남원	산내	장항	4-1	도	31	31	장항리 **	배*운	
40	남원	산내	장항	5-1	도	465	323		국(남원시)	
41	남원	산내	장항	5-4	답	85	85		국(남원시)	
42	남원	산내	장항	906	도	7,091	261		국(건설부)	
43	남원	산내	장항	6-2	도	29	2		국(남원시)	
44	남원	산내	장항	104-1	도	13	13	장항리 ***	최*석	
45	남원	산내	장항	19-3	도	27	27	장항리 ***	최*개	
46	남원	산내	장항	19-4	도	30	18		국(남원시)	
47	남원	산내	장항	18-2	도	72	13		국(남원시)	
48	남원	산내	장항	18-3	답	23	23		국(남원시)	
49	남원	산내	장항	21-1	전	240	17		국(남원시)	
50	남원	산내	장항	16-1	도	26	26	부산시 북구 시랑로 ***, *동 ***호	박*옥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m ²)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1	남원	산내	장항	22	철쭉	H=0.3	15m		
2	남원	산내	장항	20	감나무	H=1-1.5	3주		
3	남원	산내	장항	6-1	벗나무	H=4-5m	36주		
4	남원	산내	장항	6-1	뽕나무	H=2m	3주		
5	남원	산내	장항	866-1	벗나무	H=4-5m	4주		
						H=2m	8주		
6	남원	산내	장항	867	감나무	H=2-2.5m	8주		

남원시청 고시 제2017 - 13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산31-11
2. 사업목적 :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240.0m, 폭 B=5.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7. 11. ~ 2018. 11.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7. 11. 29.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남원시 낙현길 5, 102동 ○○○○호 박○성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7년 11월 3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7-1605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설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승화원, 승화당, 자연장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의 정의, 설치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장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라. 유골의 봉안 및 인도, 봉안당·자연장의 사용기간, 만료된 유골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30. ~ 2017. 12.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192), FAX(063-620-6744), 이메일(k1980852@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승화원 · 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문화의 전환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의 정의, 설치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장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라. 유골의 봉안 및 인도, 봉안당·자연장의 사용기간, 만료된 유골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1. ~ 2017. 12. 20.(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장사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관리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수 있다.

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사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② 자연장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자연장지 사용권자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골의 봉안 및 인도)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봉안당의 봉안함에는 부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고, 자연장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씩 두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30일전 또는 만료일 90일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

장은 없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행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남원시 솔터길 40-36 (광치동 690-1번지)	
봉안시설	남원시 승화당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남원시 광치동 산 233-2번지 일원	
유택동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제4조 관련)

시설별	이용대상	구분		사용료(원)	
				관내	관외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관외 : 관내를 제외한 사망한 사람	사체(만15세 이상)		60,000	500,000
		사체(만15세 미만)		40,000	300,000
		사 태		20,000	150,000
	○ 관내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시 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 장 유 골		30,000	300,000
봉안시설 (남원시 승화당)	○ 관내 :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인 경우 -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사망자의 주소가 관내 6개월 미만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이 아닌경우 사용 불가	구분없음		100,000	300,000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한 유골 ○ 남원시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봉안당 미만료자 이용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 년)	500,000	해 당 없 음
		유택 동산	처리 수수료	20,000	해 당 없 음

[별표 3]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1년 이내	50
2	3년 이내	30
3	5년 이내	10
4	5년 초과	없음

※ 자연장지 사용권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공설장사시설(봉안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망자 (유골)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사망(개장) 장 소		사망(개장) 연월일	
	사망(개장) 사유		봉안·자연장 번호	
	사 용 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봉안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봉안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 허가증

사망자 (유골)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봉안·자연장 번호		
	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자연장지(봉안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사망 장소		사 망 사 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내용	안치번호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봉안당, 자연장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유골인도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년 월 일	봉 안 번 호	제 호
	봉안연월일	년 월 일	유골인도사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p>「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p>※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에서 이미 조성되어 운영중인 장사시설(승화원·승화당) 및 남원시 광치동 산233-2 일원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 관련조문

-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명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2018년) 예산 : 622백만원

- 인건비 : 33백만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141백만원
- 재료비(가스구입비) : 60백만원
- 시설비(화장로,봉안단,자연장지 개·보수 등) 388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622백만원
 -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 2019년 : 480백만원
- 2020년 이후 : 500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자체재원 및 국·도비 예산 확보

※ 시설내 자체수입 ⇒ 시설 사용료 연 170백만원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622백만원
 - 보조금 452백만원(국비 105, 도비 53, 시비 294)
 - 시설내 자체수입(사용료) 170백만원
- 2019년 : 480백만원
 - 보조금 300백만원(시비 100%)
 - 시설내 자체수입 18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622	480	500	630	510	2,742	
국 비	105			100		205	
도 비	53			50		103	
시 비	294	300	310	280	310	1,494	
자체수입(사용료)	170	180	190	200	200	940	
기타수입							
세 출	622	480	500	630	510	2,742	
인 건 비	33	34	35	36	37	17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141	142	145	147	148	723	
재료비(가스비)	60	62	65	67	70	324	
시설 유지비	388	242	255	380	255	1,5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52	300	310	430	310	1,802
	국비	105			100		205
	도비	53			50		103
	시비	294	300	310	280	310	1,494
자체 수입	소 계	170	180	190	200	200	940
	지방세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170	180	190	200	200	940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 공고 제2017-1607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며 이차보전 지원율을 금리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반영

나.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다. 이차보전 지원 조정 (안 제11조)

- 이차율을 일반기업은 3퍼센트 이내,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불입”을 → “납입”으로, “납골당”을 → “봉안당”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다. 입법예고 : 2017. 12. 1. ~ 2017. 12. 21. (20일간)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063-620-6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며 이차보전 지원율을 금리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반영

나.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다. 이차보전 지원 조정 (안 제11조)

- 이자율을 일반기업은 3퍼센트 이내,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불입”을 → “납입”으로, “납골당”을 → “봉안당” 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01. ~ 2017. 12 .2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일반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남원시 용자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 본문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

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당 등을”을 “수당과 여비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 중 “1퍼센트를”을 “1퍼센트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자불입”을 “이자 납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②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 ----- ----- ----- -----</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일반회계</u>----- -----</p>
<p>제6조(용자대상업체) 용자대상업체는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 7. (생략)</p>	<p>제6조(용자대상업체)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 -----</p>
<p>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 용자심</p>	<p>제10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p>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10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

한 사항을 심의하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금액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3(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 <단서 삭제>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
를 추가로 지원한다.

③ ~ ⑤ (생략)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
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생략)

----- 1퍼센트
이내에서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이자 납입 -----

-----.

⑦ (현행과 같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